

[충청남도 조례 제5085호]

튼튼한 조례

충청남도 4에이치 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 윤철상 의원

“청년 영농인들의
도전을 응원하다”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귀촌과 귀농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정부에서 발표한 귀촌 가구는
49만 4569명으로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30대 이하 청년층 귀농 가구수는
1,362가구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창업 청년농부도 그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 세계적 활동이자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특히 주목 받던
'4에이치 운동'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4에이치

지성(head)·덕성(heart)·근로(hand)·건강(health) 네 단어의 머리글자를 딴 말로,
영농후계라는 과제를 지닌 청년들에게 농사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학습,
실천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운동입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4에이치 활동' 관련 조례를 수정하여,
청년들의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4에이치 활동 단체의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의 무상사용을 규정해
보다 다양한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4에이치 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개정 되었습니다.

제 3 조

영농정착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 규정

제 6 조

①

4에이치활동 및 영농정착 지원 주관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 지원 규정

②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을 위해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의 무상사용 규정 신설





우리 도에 정착한 청년 영농인들이
농업과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바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